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광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7011

발의연월일: 2022. 8. 25.

발 의 자: 박광온 · 김영배 · 윤영찬

김철민 • 이장섭 • 민병덕

송갑석 • 이용빈 • 윤건영

신영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대를 받는 동물이나 유실·유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누구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동물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,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직무상 위 동물을 발견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음.

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동물보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, 이들을 피학대동물이나 유실·유기동물을 발견한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(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39조제2항제9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	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
전부개정법률	전부개정법률
제39조(신고 등) ① (생 략)	제39조(신고 등) ① (현행과 같
	승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
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제1	
항에 따른 동물을 발견한 때에	
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	
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	
하여야 한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9.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